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7) 상정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7)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옴부즈만 이 강 진)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3조)
·제7조 →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인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3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서면에 의할 수”를 “서면으로 할 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13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3조)
·제7조 → 제9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인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3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서면에 의할 수”를 “서면으로 할 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 례</p> <p>제2조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시민 옴부즈만은 다음 <u>각호</u>의 직무를 행한다.</p> <p>1. (생략)</p> <p>2. 스스로의 발의에 <u>의한</u>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p> <p>3.~5. (생략)</p> <p>제3조 (사무관할제외)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u>각호</u>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p> <p>3.·4. (생략)</p> <p>5. 판결, 재결 등에 <u>의하여</u>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제4조 (시민옴부즈만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시민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칙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조(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u>각</u> <u>호</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따른</u> -----</p> <p>3.~5. (현행과 같음)</p> <p>제 3 조 (사 무 관 할 제 외) ----- <u>각</u> <u>호</u> -----.</p> <p>1. (현행과 같음)</p> <p>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p> <p>3.·4. (현행과 같음)</p> <p>5. ----- <u>따라</u> -----</p> <p>6.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민옴부즈만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아니 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p> <p>①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이 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 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p> <p>② 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p> <p>⑤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 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 ① ----- 3명 이 내로 하고, 그 중 1명 -----.</p> <p>② ----- 「지방공무원법 -----」</p> <p>③ ----- 한정하여 -----.</p> <p>④ ----- 따라 -----.</p> <p>⑤ -----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p>

현행	개정안
<p>제8조 (비밀유지 의무)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u>아니되며</u>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p>	<p>제 8 조 (비 밀 유 지 의 무) ----- - - - - - <u>아 니 되 며</u> -----.</p>
<p>제11조 (고충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u>당해</u>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1조(고충의 신청) -----<u>해당</u> ----- -----.</p>
<p>제12조 (고충의 신청절차) ①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서면에 의할 수</u>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u>기타의</u>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u>기타</u>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생략)</p>	<p>제12조(고충의 신청절차) ① ----- -----<u>각호</u>-----<u>서면</u> <u>으로 할 수</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그</u> <u>밖의</u> ----- ----- 2.----- ----- 3. <u>그</u> <u>밖에</u> -----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 (고충의 조사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4. 허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p> <p>5. 기타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p> <p>③ 시민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 (시에의 통보) ① 시민옴부즈만은 신청에 관련되는 고충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채택된 사안(이하 “고충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제13조(고충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현행과 같음)</p> <p>4. ----- 그 밖의 -----</p> <p>5. <u>그 밖의</u> -----</p> <p>③ -----제2항에 따라 ----- ----- ----- -----.</p> <p>제14조(시에의 통보) ① ----- ----- ----- 따라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6조에 따른 ----- -----해당-----</p>

현행	개정안
<p>제18조 (조치결과 등 요구) ①시민 움부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 과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 에 조치결과를 시민움부즈만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민움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있는 때 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p>	<p>제18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 -----에 따라 ----- ----- -----.</p> <p>② -----에 따라 ----- -----15일 -----이내에 -----.</p> <p>③ -----에 따 라----- -----에 따라 ----- -----.</p>
<p>제19조 (공표) ①시민움부즈만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의 견표명 또는 제1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시민움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p>	<p>제19조(공표) ① ----- -----에 따른 -----에 따른 -----.</p> <p>② -----에 따라 ----- ----- -----.</p>
<p>제20조 (사무기구) ①·② (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사무기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 -----.</p>

현행	개정안
<p>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2조(시행규칙) ----- <u>시행에</u> <u>필요한</u> ----- -----.</p>

<관계 법령발췌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
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